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정책관 및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노동시장경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7)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각각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4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4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일까지 존속하며, <u>2026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 <u>2027년 4월 1일</u> ----- ----- -----.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0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 관 5명)은 <u>2025년 12월 31일</u>까 지 존속하며, <u>2026년 1월 1일</u> 이 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0명(행 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5명)으 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u>2027년 3월 31일</u>----- ----- <u>2027년 4월 1일</u> -- ----- ----- ----- -----.